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4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양부남 · 조계원 · 정준호
복기왕 · 김한규 · 김문수
윤준병 · 이정문 · 김준혁
박정현 · 박균택 · 전진숙
이건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